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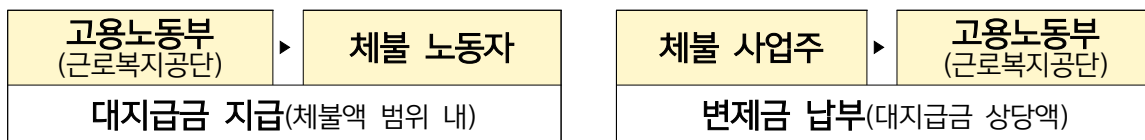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4.8.7.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 원)에 대해 '26.5.29.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장기간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24.8.7.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신용제재를 도입하였다.

* 대지급금 제도 운영의 주요 구조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로서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회수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및 대출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9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임
 - 다수의 부동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변론기일 불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음
- ② 경남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5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임
 - 대지급금 변제금을 분할 상환하다가 2025년 하반기부터 대지급금 변제를 중단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4억 7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
 - B업체 대표이사 ‘ㄱ’씨는 대지급금 변제를 중단한 이후부터 잠적한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를 위해 B업체 소유의 출자증권 압류 및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임
- ③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C업체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6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임
 - 대지급금 변제금을 분할상환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대지급금 변제를 중단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25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신용제재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절차에 '26.5.12.부터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하고, 대지급금 장기간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지급금 제도 개요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과	책임자	과 장	남성욱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우이용 (044-202-7563)
담당 부서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 체불예방지원부	책임자	부 장	양창훈 (052-704-7341)
		담당자	팀 장	최서희 (052-704-7314)

□ 개요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중장년 우대,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재직자: 700만원